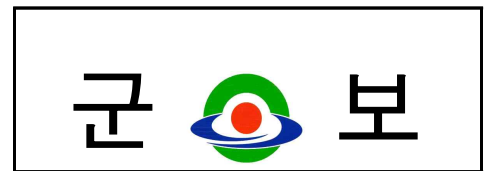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44호 2023. 5. 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려

-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553호)
-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554호)

훈 령

-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4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5월 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553호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,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

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,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담당”을 “새마을경제팀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”를 “회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수시로 지역 물가 동향을 파악 및 관리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비상설화 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)

-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
- 임기 및 개최 빈도 관련 사항 삭제하여 운영 규정 유연화

나.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(제7조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5월 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554호

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역개발계획에 반영)”을 “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지원사업
2. 그 밖에 군수 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10명 이내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에서 선정한”을 “와 협의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

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제6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4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각 1명

제11조제1항 중 “생활환경담당주사로”를 “청소관리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”를 “의거 직접영향권지역으로 고시하거나, 지정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범위내 인접한 리단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주변 지역(청북1, 2리) 지원 등에 있어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불만 해소와 장기적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.

◇주요내용

가.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사업 정비(안 제4조)

- 군수 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

나.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구체화(안 제6조)

- 구성인원 10명 이내
 - 주민대표 5명, 예천군의회 의원 2~3명,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각1명

다. 기금의 가구별 지원범위 정비(안 제12조)

- 주변영향지역 지정 고시지역 → 지정 고시지역과 처리시설이 인접한 리단위 지역으로 확대

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5월 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48호

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중 “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◇개정이유

- 병무청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 및 「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감면(100분의 50) 대상 신설(안 제4조제2항)

- 「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⇨ 신설

나. 상위법령 명칭 변경(안 제4조제2항제5호)
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을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